# DDA 2005년 8월 농업협상 동향

DDA 협상은 당초 7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세부원칙 1차 초안의 도출이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면서 실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의제들이 2005년 하반기 협상의 과제로 남겨졌으며, 아울러 홍콩 각료회의에서의 모델리티 도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 국의 협상단들은 8월 휴가철을 맞아 잠시 협상을 중단하고 새로운 전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금년 8월까지의 협상경과를 정리한다.

## 1. DDA 농업협상 2월 논의 결과

2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농업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비종가세의 종가세 산정 문제였다. 종가세 상당치 전환은 지난 8월 1일 합의된 기본골격에서는 관세를 구간별로 나누어 감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각국의 관세를 구간별로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전환하여야 각 국의 관세구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은 종가세 상당치를 제출하는 시기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G10과 EC는 관세감축공식을 먼저 논의한 다음 종가세 상당치를 제출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케언즈 그룹 등 수출국들은 투명성 측면에서 반대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무역왜곡보조에 대해서는 케언즈 그룹과 G20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대폭적인 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미국, EC, G10은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농업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회원국 중 보조 수준이 높은 EC와 미국을 상위 구간에 포함시켜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실제 이행되고 있는 보조액과 양허 받은 보조금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감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G10은 수입국들의 식량안보를 위해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출제한 도입 시 사전에 통보할 것, 이해당사국과 협의할 것, 구제조치를 도입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브라질, 호주, 캐나다 등은 현행 농업협정 부속서 2의 그린박스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린박스가 가진 사실상의 무역왜곡적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를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EC, G10은 현행 그린박스의 기준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농업개혁의 추진에 차질을 야기할 것이라며 협상의 순조로운 진전을 위해 현행 기준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호주, 칠레, 브라질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TRQ관리가 시장접근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G10 등 수입국들은 TRQ는 시장접근에 대한 기회제공의 의미를 가질 뿐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내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TRQ관리를 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 2. DDA 농업협상 3월 논의 결과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감축과 개별 보조의 감축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본골격에서는 개별 보조의 감축 결과와 이를 합산한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감축 결과 중 낮은 것이 상한으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 논의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은 분야별 감축 논의에 집중하여 회원국간 합의점을 모색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구간별로 나누어 감축하기로 한 AMS의 구간을 몇 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캐나다가 제안한 3~4개가 많은 지지를 얻었다. 캐나다 제안에 따르면 전세계 AMS 양허 총액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면 EC가 최상위 구간에, 미국과 일본이 두 번째 구간에, 기타 회원국이 나머지 한 개 또는 두 개의 구간에 나누어 배치된다.

이러한 캐나다의 제안은 AMS양허 총액을 절대적 기준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나 일부 회원국들은 생산액 대비 AMS양허 비중 등 상대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의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그로서 의장은 향후 절대적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형평성 차원에서 상대적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한편 구간별 감축방식으로는 선형방식과 조화방식이 언급되었으나 더 이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Blue Box와 관련하여 G20은 New Blue Box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블루박스의 품목별 상한 설정 등 추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 감축 약속을 우회하는 방편으로서 블루박스가 악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편 Blue Box 지급 산출기준인 농업총생산액의 기준 연도로서 최근 3개년(2001～03)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국가가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여기에 반대하며 UR 이행기간을 거론하였다.

또한 개도국들은 de-minimis가 개도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유일한 보조 정책수단임을 강조하면서 감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C, 미국은 기본골격 합의문 para.11에 근거하여 de-minimis 감축도 협상대상임을 지적하며, 개도국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감축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3월 협상에서는 각국의 보조액을 측정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생산액 통보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생산액 미통보 국가들의 처리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2월에 이어 3월 협상에서 시장접근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대두된 것은 종가세상당치(AVEs) 전환이었다. 각 국은 종가세 상당치를 계산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종가세 상당치 전환방식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그러나 종가세 상당치 산출 시 기초 자료가 되는 수입가격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사이에 견해차가 매우 컸다.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환산하는 데에는 국제가격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100원/kg인 종량세가 가격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준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때 수입가격의 자료로서 WTO의 공식 데이터 베이스인 IDB(Integrated Databases)와 UN의 Comtrade 중 어

떤 것을 쓸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다.

수출국들은 WTO의 IDB 자료에 근거한 수입가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IDB 자료는 각 국이 WTO에 통보한 자료로서 수입실적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양이 미미하여 신뢰성 있는 수입가격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계산된 수입가격이 일반적인 국제가격보다 높은 경우(blips라고 부름)가 있기 때문이다. 수입물량의 품질차로 인해 국가별로 수입단가가 달라 국제가격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수출국들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IDB 대신 Comtrade자료를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수입국들은 WTO의 공식 데이터 베이스인 IDB 가격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대립의 이면에는 비종가세의 종가세 상당치 산출시 AVEs가 가능한 한 낮게 계산되어 낮은 감축률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국과 이를 반대하고 있는 수출국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었다.

각 협상 그룹들은 수입가격 자료를 놓고 맞서다가 타협안으로 IDB 자료를 기초로 수입가격을 산출하고 일부 IDB와 Comtrade간 차이가 존재하는 품목들(blips)은 따로 분류하여 조정을 하도록 합의하였다.

## 3. DDA 농업협상 4월 논의 결과

4월 13일부터 19일 사이에 열린 농업위원회에서는 3월에 논의되었던 blips 품목들의 수입가격 조정 방법을 놓고 수출국과 수입국간 의견이 대립되었다. 수출국들은 Comtrade 자료를 75, IDB 자료를 2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수입가격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수입국들은 50대 50으로 평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회원국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며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대신 FIPs(Five Interested Parties: 미국, EU, 호주, 브라질, 인도)라고 불리는 주요 5개국에 의해서 AVEs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G10은 FIPs에 의한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FIPs 합의안에 대한 검토협의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침묵으로 일관하여 FIPs의 합의안이 사실상 AVE에 대한 논의의 종지부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기초로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뒤늦게 발견되어 AVEs합의는 최종 단계에서 어이없게 결렬되고 말았다. EU는 왜곡된 수입가격을 조정하여 AVE를 계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나머지 4개국은 각각의 자료를 이용해 계산된 AVE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량원조에 대해서 회원국들은 우회적인 수출보조 또는 시장점유 확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위급상황이나 재난상황에서의 식량원조 등 진정한 의미의 식량원조(genuine food aid)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으므로 우선 진정한 의미의 식량원조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하여 이를 여타 수출보조와 구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4월 농업위원회에서 EU 등 수입국은 수출국영무역기업이 갖는 간접적 수출보조 내지 수출시장 확대 효과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수출국영무역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호주, 캐나다 등은 수출국영무역기업이 무역을 왜곡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EU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개도국의 경우 수출국영무역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수출국영무역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개도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블루박스에 대해 수출국들은 새로운 블루박스가 AMS보다 덜 무역왜곡적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해당 품목의 생산을 요구하지 않을 것
② 기준 면적이나 생산량을 변경하지 말 것
③ 한 품목에 AMS와 블루박스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을 것
④ 품목별 상한을 설정할 것
⑤ 목표가격의 설정 기준을 정할 것
⑥ 가격차 보상 수준의 한계를 정할 것 등이다.

그러나 미국과 수입국들은 무역왜곡적인 보조에서 생산중립적인 보조로 농정을 개혁과정에서 블루박스가 중간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블루박스의 추가 기준 설정이 농정개혁에 차질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4. DDA 농업협상 5월 논의 결과

2005년 5월에는 농업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5월 초 파리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AVEs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국, EU를 비롯한 주요 5개국(FIPs)들은 blips 품목 중 세번상 1류에서 16류에 해당하는 쇠고기나 밀과 같은 품목들의 종가세 상당치를 계산할 때는 Comtrade자료를 82.5%, IDB자료를 17.5%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수입가격을 산출한 다음 조정된 수입가격을 AVEs 계산에 이용하기로 하였으며 17류 이상인 가공 농산물들의 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Comtrade자료를

60%, IDB자료를 40%의 비율로 가중평균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VEs에 관한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배타적으로 이루어졌던 FIPs 중심의 협상 진행 방식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협상 진행 방식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5개국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던 FIPs 회의는 의제별로 이해 관계를 가진 나라들을 더 초대하여 확대하기로 하여 수입국인 스위스나 일본이 참여하게 되었다.

## 5. DDA 농업협상 6월 논의 결과

지난 5월 초 각 국이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루자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각 국은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여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미국은 조화 원칙에 충실한 스위스 공식을 주장하고 있으며 EU와 G10은 관세감축에 있어서 신축성이 있는 UR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케언즈 그룹과 G20은 조화원칙이 충실히 반영된 공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만을 표명하는데 그쳤다.

한편 관세 감축공식과 관련되어 새로운 제안이 나오기도 하였다. 캐나다는 누진 소득세와 비슷한 형태의 감축방식을 제안했는데,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조화원칙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구간별 관세감축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역전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졌다. 한편, 중국은 구간내 관세감축 방식을 복수로 설정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고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UR 방식에 따라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관세구간에 대해서 각국은 3~4개로 구간을 나누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높은 관세일수록 대폭적으로

감축한다는 조화원칙을 좀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4개 이상의 구간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도국을 위한 구간이 따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민감품목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G10과 EU는 민감품목에 대한 협상이 일반품목의 관세감축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관세감축폭과 TRQ증량폭 간의 trade off 관계를 강조하며 TRQ 증량폭이 커질수록 관세감축을 작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케언즈 그룹을 비롯한 수출국들은 현행 TRQ 품목만이 민감품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수입국들은 TRQ 품목 이외의 품목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반발하였다.

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국가들은 개도국들이 선진국 시장에 농산물 수출할 때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가 감소되는 문제와 민감품목의 대우 수준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일부 개도국들은 개도국 중에서도 새로운 시장접근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특혜관세의 혜택을 입고 있는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이를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G33은 특별품목과 SSM(Special Safeguard Mechanism)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모임으로서 이들은 SP와 SSM에 관한 공동 제안서를 배포하였다. 이 제안서에서 G33 국가들은 SP에 대해서는 관세감축과 TRQ 양허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도국들은 SP 선정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특별품목에는 SSM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SSM에 대한 제안서에서는 SSM이 물량과 가격 모두 발동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수입 급증 시 자동적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거나 수입물량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SSM에 대한 개도국들의 요구가 특별품목에 대한 제안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며 SP와 SSM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특별품목과 SSM에 대한 개도국들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도국들도 일정 수준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그로서 의장은 6월 28일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별로 오는 7월말까지의 협상 목표에 대한 평가문서를 배포하였다. 그로서 의장은 평가문서를 통해 시장접근분야의 주요 쟁점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각 국은 구간내의 관세감축공식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 구간 수에 대한 합의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세감축공식 뿐만 아니라 구간수 구간의 경계,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으므로 논의 진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그로서 의장은 평가문서에서 각 국의 협상단들이 현 시점에서 핵심 쟁점들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로서 의장은 무역왜곡보조와 AMS 감축에 적용될 구간에 대해 집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부 선진국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양허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들이 농정 개혁에서 기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AMS를 양허한 17개 개도국의 경우 양허 수준으로 볼 때 최하위 구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지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로서 의장은 품목 특정 AMS의 상한에 대한 논의는 현 단계에서 이르다며 무역왜곡보조의 감축과 관련된 의제들이 해결된 다음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de minimis의 감축과 관련

된 의제도 마찬가지로 2005년 하반기에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새로운 블루박스의 기준에 대해서 그로서 의장은 블루박스에 관한 논의가 협상의 여타 의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무역왜곡보조의 감축폭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지적하였다. 오는 7월 협상에서는 블루박스에 대해 논의가 더 진행될 것이지만 구체적인 감축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로서 의장은 무역왜곡효과가 없는 그린박스에 대해서 수출국들이 그 규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 단계까지의 논의 동향을 설명하였다.

## 6. DDA 농업협상 7월 논의 결과

당초 7월 회의는 7월 12, 13일 개최될 중국 따렌(Dalian)에서의 소규모 각료회의와 이어지는 7월 말 modality 1차 윤곽(first approximation) 제시라는 협상 흐름에 비추어, 제네바차원(협상실무차원)에서 농업협상 핵심 쟁점에 관해 회원국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마지막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주요국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조금도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 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가장 진전이 늦은 분야는 시장접근분야로서 관세구간의 수나 경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었다. 관세 구간의 개수는 3~4개로 압축되고 있으며, 최상위 구간의 경계에 대해서는 60~100%가 언급되었다. 그러나 관세감축공식의 성격을 둘러싸고 각 협상 그룹간 시각차가 매우 컸다. EU와 G10은 UR공식을 계속해서 주장한 반면 미국과 호주 등 케언즈는 특정 공식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은 채 구간내 progressivity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만을 내세웠다.

이처럼 제네바에서의 실무 협상이 난항을 겪자 DDA 농업협상은 따렌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의미 있는 1차 윤곽의 제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협상 흐름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결국 홍콩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게 되었다.

특별회의가 끝난 이후 곧이어 12, 13일 양일간 중국 대련에서 소규모 각료회의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핵심 쟁점들에 대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예상이었다. 그러나 수출개도국 그룹인 G20은 시장접근분야의 핵심 쟁점들에 관해 제안서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절충점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과 EU가 환영의 뜻을 밝힘으로서 협상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G20의 제안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관세구간을 다섯 개로 나누고 그 경계를 20%, 40%, 60%, 80%로 정하였으며, 개도국은 관세구간을 네 개로 나누고 그 경계를 30%, 80%, 130%로 제시하였다. 또한 고관세 품목을 대폭 감축하기 위해 선진국은 100%의 관세 상한을, 개도국은 150%의 관세 상한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관세감축공식으로는 구간별 선형감축방식을 제시하였으며 개도국의 감축률은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으로 정하도록 제안하였다. 한편 각 국은 세 번의 x단위를 기준으로 N개의 관세라인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N은 매우 작은 수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감품목은 일반품목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 벗어날수록 TRQ 증량폭과 관세감축 폭이 커지도록 하였다.

G20의 제안서를 미국과 EU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수용하기로 함으로서 이후 21일부터 26일 까지 제네바에서는 초안 도출을 위한 막판 협상이 진

행되었다. 그러나 G20의 제안서는 말 그대로 논의의 출발점일 뿐 각 국이 기존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실무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결국 7월 말 세부원칙 초안 도출은 실패하였으며 그로서 의장은 1차 평가 보고서에 이어 2차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임기를 마무리하였다. 그로서 의장은 2차 평가 보고서에서 농업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다고 평가하고 농업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요 쟁저들을 패키지화 하여 논의를 동시에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장접근 분야는 가장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로서 일반 품목의 관세감축방식에서 신축성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민감품목을 통해 신축성을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국내보조분야에서는 EU, 미국, 일본을 어느 구간에 배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서 이들 국가들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블루박스의 규율에 관해서도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각 국의 협상단들이 휴가철에 들어감에 따라 DDA 농업협상은 9월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홍콩 각료회의 시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은데 반해 남아 있는 쟁점들이 너무 많아 홍콩 각료회의에서의 모델리티 도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소영 lsyjr@krei.re.kr 02-3299-4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